

명세서

발명의 명칭: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기술분야

- [1] 이 발명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채권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 채권에 기초하여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신의 매입 채무를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의 할인을 통하여 판매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 [2]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판매 기업이 부품 또는 장비 등의 물품을 구매 기업에게 납품하거나 각종의 용역을 구매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에, 그러한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의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제공 즉시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는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일로부터 일정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이 도래하면 대금을 지급한다.
- [3] 이 때, 구매 기업은 판매 기업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대금 지급을 약속하기 위한 증표로 어음 또는 거래은행의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거나 유형의 증표를 발행함이 없이 사전에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 [4] 이와 같이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판매 기업은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 전에 또는 제공 즉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정해진 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운영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대부분의 판매 기업들은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많고, 양호한 영업 실적 또는 판매 실적에도 불구하고 부도 또는 도산하는 경우도 있다.
- [5] 판매 기업들이 조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들로서는 어음을 할인하거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이 이용되고 있다.
- [6] 어음 할인은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만기일 이전에 어음의 배서양도라는 형식을 통해 어음의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공제하고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매입하는 제도로써, 어음소지자는 어음을 할인 매입한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만기일 전에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다.
- [7]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은 전자 방식으로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로써, 금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해당 외상매출채권의 채권자, 즉 판매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액면가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대출을 해주고, 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 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 [8] 이러한 제도들에 의해 구매 기업으로부터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수령한 판매 기업은 어음의 할인 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해 납품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 [9] 그러나, 어음 할인의 경우에는, 주로 신용도가 높지 않은 하청업체나 하위 부품 업체에 의해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낮은 신용도로 인하여 어음의 할인율이 높거나 어음 할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10] 어음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판매 기업의 자금 수급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대한민국 특허공보 제10-0512151호(문헌 1)에서는 '전자어음 매매중개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을 개시한다.
- [11] 문헌 1의 발명에 따른 방법에서는, 다수의 매수자 및 다수의 매도인간의 전자어음을 매매, 경매, 역경매 방식으로 매도·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개 시스템에서는 전자 어음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고 전자 어음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12] 그러나, 이러한 문헌 1의 발명은 단지 전자 어음이 거래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여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만 제시할 뿐이다.
- [13] 한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금융기관이 수행하므로, 주로 판매기업의 입장에서 거래 대상의 구매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품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 [14] 즉, 구매기업이 대기업이나 우량기업인 경우에 당해 구매 기업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1차 납품 업체나 용역업체만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의 유통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15] 또한, 매출채권이 어음이나 구매기업의 거래은행에서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아닌 일반적인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 판별 등으로 조기 현금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실익이 적고, 제2금융권 또는 사채업자가 부과하는 할인율이 매우 높아 중소기업인 판매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 [16]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출원의 출원인에 의해 출원되어 등록된 대한민국 특허공보 제10-2009140호(문헌 2)에서 개시하는 '매출채권의 상환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과 대한민국 특허공보 제10-1791470호(문헌 3)에서 개시하는 '매출채권의 거래 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 있다.
- [17] 문헌 2와 문헌 3의 발명에 따르면, 어음이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구매기업의 여유 자금이나 제3자의 자금을 활용하여 판매 기업이 구매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여 낮은 할인율로 조기에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 [18] 그러나, 이러한 방법 역시 신용도가 높은 구매 기업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1차 판매 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뿐이고, 구매자가 발행하는 매출채권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이 구매 기업인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적 과제

- [19] 이 발명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채권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 [20] 구체적으로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 채권에 기초하여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발행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신의 매입 채무를 상환하거나 금융기관의 할인을 통하여 판매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 [21] 또한, 이 방법은 구매자가 갖는 매입채무가 디지털 부채로 전환되고 판매대금으로 매출채권을 디지털 자산 형태로 보유한 판매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판매자에게도 해당 디지털 자산을 유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과제 해결 수단

- [22] 이러한 이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는,
- [23]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에 관한 이 발명에 의해 달성된다.
- [24] 이 발명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은,
- [25]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매출채권에 관한 제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제1 세금계산서는 구매자가 보유하는 구매자 단말기에 송신되는 것인,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
- [26] 구매자 단말기가 제1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1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발행된 제1 디지털 자산은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는 구매자가 제1 매출채권의 대금을 상환하는 상환 계좌를 운영하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인,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및
- [27]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 컴퓨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에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인,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 [28]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이 발명의 방법에 따라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은,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지급 주체인 구매자에 의해 발행되고, 발행의 정보는 구매자로부터 매출채권의 대금이 상환되는 계좌를 운영하는 제1 금융기관이 공유하므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된다.

- [29] 따라서, 제1 판매자는 자신이 갖는 매출채권의 댓가로서 디지털 자산을 수령하고, 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할인받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이 디지털 자산으로 자신이 지급하여야 하는 매입채무를 결제할 수도 있다.
- [30] 이 발명의 제1의 부가적 특징으로서, 이 발명의 유통 방법은,
- [31]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후에,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1 판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는 것인,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 및
- [32]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제받겠다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 [33] 를 더 포함하고,
- [34]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1 판매자 또는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에 제1 판매자 또는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각각 송금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 [35] 이러한 부가적 특징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은 단지 그 디지털 자산에 관한 매출채권을 보유한 판매자가 수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디지털 자산을 매입채무의 결제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36] 이 발명의 제2의 부가적 특징으로서, 이 발명의 유통 방법은,
- [37]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후에,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1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 [38] 제1 할인 의사 표시 단계에서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과 조기 회수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1 조기 회수 수락 단계;
- [39] 를 더 포함하고,
- [40]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1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 [41] 이러한 유통 방법의 추가의 특징에 따르면, 제1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수령하는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 [42] 특히, 디지털 자산에 관한 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은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고, 제1 금융기관은 디지털 자산이 할인되어 그 소유권이 제2 금융기관에 귀속된 것이라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2 금융기관으로서는 할인하여 제1 판매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상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43] 특히, 할인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액의 결제가 구매자로부터 제1 금융기관을 거쳐 이루어지므로, 제2 금융기관으로서는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 구매자와 제1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의 할인을 할 수 있으므로, 할인율을 낮게 설정할 수 있다.
- [44] 이 발명의 추가의 특징으로서, 이 발명의 제1의 부가적 특징에 따른 유통 방법은,
- [45]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후에,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 [46]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과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조기 회수 수락 단계;
- [47] 를 더 포함하고,
- [48]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 [49] 이러한 추가의 특징에 따르면, 제1 판매자에게 제공한 물품이나 용역의 댓가로서의 제2 매출채권을 제1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받은 제2 판매자도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받을 수 있다.
- [50] 그러한 할인의 절차는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자인 구매자로부터 직접 제1 디지털 자산을 수령한 제1 판매자가 제2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는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51] 제1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할인은 구매자의 신용도와 제1 금융기관의 신뢰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1 디지털 자산을 현재 보유한 제1 판매자나 제2 판매자의 신용도는 할인 여부 및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 [52] 따라서, 제2 판매자는 제2 매출채권에 대한 댓가로서 수령한 제1 디지털 자산을 유리한 조건하에 할인받아 조기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53] 이 발명의 제2의 부가적 특징에 관한 또다른 추가의 특징으로서, 이 발명의 유통 방법은,
- [54]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에 관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제2 세금계산서는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되는 것인,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 및

- [55]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2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2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발행된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 [56] 를 더 포함하고,
- [57]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 [58]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받겠다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고,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보유 주체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 [59]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1 판매자로부터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이 입금되면,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 또는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판매자 또는 제2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 [60] 이러한 추가의 특징에 따르면,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제1 판매자 역시 제2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고,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제1 디지털 자산과 제2 디지털 자산의 양자를 이용하여 제2 판매자에게 제2 매출채권에 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61] 또한, 제1 판매자로부터 제2 매출채권의 대금으로서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을 수령한 제2 판매자는 수령한 디지털 자산을 할인받아 제2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 [62] 그와 같은 조기 회수의 절차로서, 제1의 부가적 특징에 따른 유통 방법은,
- [63]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후에,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고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 [64]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에서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조기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조기 회수 수락 단계;
- [65] 를 더 포함하고,
- [66]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2 판매자로부터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 [67] 이 발명의 제1의 부가적 특징을 갖는 유통 방법에서,
- [68]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조기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할인을 정보 및 제2 판매자가 제1 판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발생하는 제2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제2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2 금융기관의 할인을 정보가 미리 결정되고,
- [69]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에서, 제2 매출채권의 결제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은 제1 매출채권의 상환일과 제2 매출채권의 상환일의 간격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구성할 수 있다.
- [70] 구매자가 발행한 제1 디지털 자산은 제1 판매자가 제2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발행하는 제2 디지털 자산 등에 비하여 높은 신용도에 따른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거나 그 상환기일이 제2 매출채권보다 더 빠를 수 있다.
- [71] 따라서, 제1 디지털 자산의 현재 가치는 동일금액 및 동일기간을 상정할 때, 제2 디지털 자산이나 제2 매출채권의 현재 가치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제1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 매출채권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의 제1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 [72] 이로써 제1 판매자는 직접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제2 판매자로서도 높은 신용도와 낮은 할인율을 갖는 제1 디지털 자산을 수령하여 조기에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 [73] 한편, 이 발명의 유통 방법에 관한 시스템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제1 및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의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의 전송,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소유 주체의 변동 정보의 전송과 같은 주요 정보의 생성과 전송이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74] 따라서, 거래와 유통의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주체를 통하여 주요 단계가 수행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뢰성 및 편의성이 담보될 수 있다.
- [75] 또한, 모든 정보의 유통, 특히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와 소유 주체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용하는 분산원장으로 기록되고 각 당사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더 확보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 [76] 도 1은 이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성도이고,
- [77] 도 2 내지 도 4는 도 1에 도시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이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방법의 순서를 보여주는 플로우 차트이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형태

- [78] 이하, 이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이 발명의 실시예를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 [79]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시예는 단지 이 발명이 구현되는 하나의 예를 설명하는 것일 뿐이며, 이 발명은 이러한 실시예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청구의범위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변형과 변경 및 구성의 부가가 가능하며, 그러한 변형과 변경 및 구성의 부가는 모두 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80] 이하의 설명에서는 구매자는 제1 판매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러한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댓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자이고, 제1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제2 판매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러한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댓가를 지불하여야 하는 자이다.
- [81] 따라서, 제1 판매자는 제2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일 수 있다. 실시예와 도면에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제2 판매자 역시 또 다른 제3의 판매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댓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자일 수 있다.
- [82] 즉, 이 발명에서 구매자는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만을 하는 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구매자일 뿐이고, 실시예에서 제1 판매자는 제2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가 된다.
- [83] 도 1은 이 발명의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이 구현되는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유통 방법에 따른 거래에서의 개략적인 정보의 흐름이 도시되어 있다.
- [84]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에 관한 거래는 구매자와 제1 및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단말기(20, 30, 40)와 제1 및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50, 60)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의 제3자인 중개자가 운영하는 중개 컴퓨터(10)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 [85] 중개자는 본 실시예의 거래, 즉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되는 중개 컴퓨터(10)를 운영한다. 중개 컴퓨터(10)는 중개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중개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서버 장치와 데이터베이스 장치 및 전용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86] 또한, 중개 컴퓨터(10)는 중개자가 직접 이를 운영할 필요는 없고 중개자의 위탁 하에 별도의 업체에 의해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87] 또한, 중개 컴퓨터(10)는 어느 한대의 컴퓨터 장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자가 운영하며 상호 네트워크에 의해 서로 접속되어 정보를 송수신하는 복수 개의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88] 구매자와 제1 및 제2 판매자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컴퓨터에는 각각,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과 구매,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ERP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다.

- [89] 구매자, 제1 판매자 및 제2 판매자가 이용하는 구매자 단말기(20), 제1 판매자 단말기(30) 및 제2 판매자 단말기(40)가 마련되고, 이러한 단말기들은 구매자와 제1 및 제2 판매자가 보유하고 운영하는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세금 계산서의 발행이나 디지털 자산의 발행, 디지털 자산을 통한 매입채무의 상환이나 디지털 자산의 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이거나 당해 단말기에서 전술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정보기기를 지칭한다.
- [90] 그러한 단말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휴대형 정보 기기일 수도 있고, 서버 컴퓨터에 연결되는 단말기나 개인용 컴퓨터일 수도 있다.
- [91] 또한, 제1 및 제2 금융기관 컴퓨터(50, 60)는 제1 및 제2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서버 장치이거나 특정의 금융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 장치일 수 있다.
- [92] 이 실시예에서 제1 및 제2 금융기관 컴퓨터(50, 60)는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이루는 서버 장치이거나 전산 시스템의 서버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거나 디지털 자산의 할인에 관한 정보 처리를 하거나 구매자와 제1 및 제2 판매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정보 기기일 수 있다.
- [93] 한편, 구매자의 매입채무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매출채권이며, 이는 상호 대응하는 것이므로, 이 명세서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구매자가 제1 판매자에 대해 갖는 매입채무와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 대해서도 매입 채무 역시 '매출채권'으로 칭한다.
- [94] 이 실시예에서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는 구매자나 제1 판매자가 매출채권을 상환하는 상환 계좌(51, 52)를 운영하며,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금액이 입금되거나 디지털 자산을 할인한 금액이 입금되는 제1 및 제2 판매자의 거래 계좌(53, 54)를 운영하는 것이다.
- [95] 그러나, 이는 설명과 도시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구매자나 제1 판매자가 매출채권을 상환하는 상환 계좌(51, 52) 또는 제1 및 제2 판매자 거래 계좌(53, 54)는 제2 금융기관 컴퓨터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나 이 명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다른 금융기관이 운영 및 관리하는 계좌일 수 있다.
- [96] 이 실시예에서 제2 금융기관은 제1 판매자 단말기(30) 또는 제2 판매자 단말기(40)로부터의 제1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에 관한 요청을 접수하고 요청을 수락하여 제1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에 따른 금액을 제1 또는 제2 판매자의 거래 계좌에 송금하며, 제1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금액을 송금받는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 [97] 그러나, 이러한 제2 금융기관이 제1 또는 제2 판매자의 거래 계좌를 운영하거나 제1 판매자의 상환 계좌를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 [98] 다만, 이 실시예에서는 제1 금융기관은 주로 디지털 자산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로부터 상환 대금이 입금되는 계좌 및 제1 판매자와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고, 제2 금융기관은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는 금융기관으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 [99] 한편, 이 실시예에서는 금융기관 사이의 자금의 이체와 송금만이 제1 및 제2 금융기관 컴퓨터(50, 60)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그 밖의 거래와 정보의 교환 등은 모두 구매자 단말기(20), 제1 및 제2 판매자 단말기(30, 40), 및 제1 및 제2 금융기관 컴퓨터(50, 6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수행된다.
- [100] 그러나, 이 발명에 따른 거래와 정보의 교환은 각각의 단말기와 컴퓨터 사이의 정보 교환이나 정보 전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 [101] 특히, 거래의 정보, 특히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정보가 분산 데이터베이스나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원장 기술에 의해 기록되고 각 참여 주체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 그러한 분산원장 기술에 의한 유통 정보의 공유에 의해,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다.
- [102] 이하에서는 이러한 이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구성되는 시스템에서의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의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103] 먼저,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주체들, 즉 이 실시예에서는 구매자와 제1 판매자와 이들의 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이 입금되는 상환 계좌를 운영하는 제1 금융기관 사이에 약정이 체결된다.
- [104] 이러한 약정은 구매자와 제1 판매자가 결제하는 금액을 수수하는 상환 계좌를 운영하는 제1 금융기관이 구매자와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주체에게 해당 주체가 보유하는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105] 이러한 약정 내용은 중개자에게 전달되어 중개 컴퓨터(10)에 기록되어 거래의 당사자들이 해당 약정을 확인할 수 있다.
- [106] 또한, 전술한 약정에는 구매자와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할인된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당해 디지털 자산을 할인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과 제1 금융기관 사이의 약정도 포함된다.
- [107] 한편, 구매자와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는 제2 금융기관은, 할인에 앞서 할인율에 대하여 중개자 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와 약정을 한다. 그러한 약정은 제2 금융기관과 중개자 또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 사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특정의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의 디지털 자산의 할인에 대한 금융기관 사이의 경매에 의해 정해질 수도 있다.
- [108] 할인율은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의 신용도나 자금 운영 상황 또는 할인을 행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
- [109] 특정의 디지털 자산의 발행 주체에 대한 할인은 하나의 제2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제1 금융권이나 제2 금융권의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나 펀드 등이 복수로 참여할 수 있고, 각각의 제2 금융기관마다 다른

할인율이 정해지고 기록될 수 있다.

- [110] 이상의 약정 내용이나 할인에 관한 사항은 중개 컴퓨터에 기록되어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는 당사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매출채권의 결제와 디지털 자산의 할인 프로세스에서 별도의 조작이나 입력 없이 적용될 수 있다.
- [111] 이와 같이 정보가 입력된 중개 컴퓨터(10)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 [112] 먼저 도 2를 참조하여, 구매자가 제1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물품이나 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구매자가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이것을 수령하는 제1 판매자가 디지털 자산에 따른 매출채권을 결제받는 과정을 설명한다.
- [113] 제1 판매자 단말기(3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제1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제1 매출채권에 관한 제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S1-1), 발행된 제1 세금계산서는 중개 컴퓨터(10)에 저장된 후에 구매자 단말기에 송신된다(S1-2). 아울러, 발행된 제1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버에도 송신된다.
- [114] 이어서, 구매자 단말기(2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제1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1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S1-3).
- [115] 발행된 제1 디지털 자산은 중개 컴퓨터(10)에 저장되고,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50)에 전송된다(S1-4).
- [116] 구매자 단말기(20)에 의해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51)에 입금되면(S1-5),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가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제1 판매자의 거래 계좌(53)에 이체하고, 이체 사실에 관한 정보를 중개 컴퓨터(10)와 제1 판매자 단말기(30)에 전송한다(S1-6).
- [117] 한편, 제1 판매자 단말기(30)가 단계 S1-3에서 발행된 제1 디지털 자산을 수신하면(S1-8), 제1 판매자는 수신한 제1 디지털 자산을 단지 보유하고 제1 매출채권의 상환 기일까지 기다려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에 의해 자신에게 이체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 [118] 제1 판매자는 수신한 제1 디지털 자산을 단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1 디지털 자산으로 자신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제2 판매자에 대한 매입채무(제2 매출채권)를 제2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거나 제2 금융기관에 할인하여 조기에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 [119] 다음으로는, 도 3을 이용하여, 제1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제1 매출채권을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 [120] 앞선 단계 S1.8에서 제1 디지털 자산의 수신을 확인한 제1 판매자는 할인을

통하여 제1 매출채권의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러한 조기 회수의 의사 표시의 정보는 제1 판매자 단말기(30)에 입력되어 중개 컴퓨터(10)에 송신된다(S2-1).

- [121] 그러한 조기 회수의 의사 표시의 정보에는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이 어느 제2 금융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 정보, 즉 선택된 제2 금융기관의 정보가 포함된다.
- [122] 제1 판매자는 제1 판매자 단말기(3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고, 제1 디지털 자산에 관한 복수의 제2 금융기관의 할인율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할인율을 갖는 제2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1 디지털 자산에 대한 할인이 가능한 제2 금융기관은 복수가 아니라 1개뿐일 수도 있다.
- [123] 또한, 제1 판매자는 자신이 수신하여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할인받을 수 있고,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 중에서 자신이 할인받고자 하는 금액을 선정할 수 있다.
- [124] 중개 컴퓨터(10)에 제1 판매자 단말기(30)로부터의 결정의 정보, 즉,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제1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겠다는 의사 표시, 선택된 제2 금융기관의 정보 및 할인받고자 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에 관한 정보가 수신되고, 중개 컴퓨터(10)는 당해 정보를 제2 금융기관 컴퓨터(60)에 전송한다(S2-2).
- [125] 제2 금융기관 컴퓨터(60)는 단계 S2-2로부터 전송된 할인에 따른 조기 회수의 의사표시의 정보를 수신하고, 그러한 조기 회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할인 가능 여부를 판정한다.
- [126] 그러한 판정은 당해 제2 금융기관이 해당 할인 요청을 수락하여 할인을 요청한 제1 디지털 자산에 관한 금액을 제1 판매자에게 지급 가능한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S2-4).
- [127] 판정의 결과는 중개 컴퓨터(10)에 전송되고, 중개 컴퓨터(10)는 판정 결과를 수신하여, 판정 결과의 제1 판매자 단말기(30)에 전송한다. 판정의 결과가 '수락'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는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에도 전송된다(S2-5).
- [128] 제2 금융기관은 할인 가능한 것으로 판정(S2-4)한 후에 할인 요청된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제1 금융기관의 제1 판매자의 거래 계좌(53)에 송금한다.
- [129] 판정의 결과가 '수락'인 경우, 판정 결과를 수신한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는 당해 정보를 저장한다(S2-6).
- [130] 이어서, 단계 S1-5와 S1-6에서와 같이,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상환 계좌(51)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는 단계 S2-6에서 수신한, 제1 판매자가 할인받은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에 관한 정보에 따라, 제1 판매자가 할인받은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제2 금융기관의 수취 계좌에 입금한다.
- [131] 제1 판매자가 할인받은 제1 디지털 자산이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 자산의 전부가 아닌 경우,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는 할인받은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상환 금액을 제1 판매자의 거래 계좌(53)에 이체한다.
- [132] 한편, 단계 S2-4에서의 판정 결과가 '거절'인 경우, 당해 판정 결과를 수신한 제1 판매자 단말기(30)로부터 판정 결과를 확인한 제1 판매자는 조기에 회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S2-1의 결정 사항의 입력을 하여 할인 절차를 재개하거나, 할인을 포기하고 제1 디지털 자산을 자신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제2 판매자에 대한 제2 매출채권의 결제에 이용할 수도 있다.
- [133] 다음으로, 제1 판매자가, 구매자가 발행한 제1 디지털 자산을 자신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제2 판매자의 매출채권의 결제에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다.
- [134] 단계 S1-3, S1-4 및 S1-7을 통하여, 구매자 단말기(20)가 발행한 제1 디지털 자산이 제1 판매자 단말기(30)에 저장된 후에, 제1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나 일부로 자신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할 수 있다.
- [135] 또한, 제1 판매자는 제2 판매자가 제2 매출채권에 대하여 발행한 제2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발행한 제2 디지털 자산을 제2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다.
- [136] 제1 판매자가 제2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1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를 하는 것과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것은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양자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137] 도 4를 참조하여 이상의 과정들이 컴퓨터들과 단말기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 [138] 제2 판매자 단말기(4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제2 매출채권에 관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S3-1), 발행된 제2 세금계산서는 중개 컴퓨터(10)에 저장된 후에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된다(S3-2). 아울러, 발행된 제1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버에도 송신된다.
- [139] 이어서, 제1 판매자 단말기(30)가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제2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2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다(S3-3).
- [140] 발행된 제2 디지털 자산은 중개 컴퓨터(10)에 저장되고, 제1 및 제2 판매자 단말기(30, 40)와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50)에 전송된다(S3-4).
- [141] 제1 판매자 단말기(30)가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중개 컴퓨터에 기록하고(S3-7), 이 정보는 중개 컴퓨터(10)로부터 제2 판매자 단말기(40)에 송신된다(S3-8).
- [142] 제2 판매자 단말기(40)는 중개 컴퓨터(10)에 접속하여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받겠다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고(S3-9), 중개 컴퓨터(10)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기록하고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여 제1 금융기관 컴퓨터(S3-10)에 전송하고, 제1 판매자 단말기(30)에는 제2 판매자 단말기(40)로부터의 수락 의사 표시의 정보를 송신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수신된다(S3-12).

- [143]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에는 앞선 단계 S3-4에서 수신된 정보에 따라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과 제2 매출채권의 상환 기한, 소유 주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앞선 단계 1-4와 단계 S2-5에서 수신된 정보에 따라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과 제1 매출채권의 상환 기한, 소유 주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 [144] 단계 S3-11에서 수신한 정보에 따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는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제공한 제1 디지털 자산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정보가 기록됨으로써, 단계 S1-4와 S3-4에서 기록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이 기록된다.
- [145] 이후의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에서, 제1 금융기관 컴퓨터(50)는 단계 S1-4, S2-5, S3-4 및 S3-11에서 기록된 제1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소유 정보 및 에 기초하여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제1 매출채권의 대금과 제1 판매자로부터 입금된 제2 매출채권의 대금을 제1 판매자의 거래 계좌(53), 제2 판매자의 거래 계좌(54) 및 제2 금융기관의 수취 계좌에 이체한다(S1-6)
- [146] 한편, 제1 판매자가 제1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여 제2 판매자에게 제2 매출채권을 결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과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의 차이 및 제1 매출채권과 제2 매출채권의 상환 기일의 차이에 따라 결제하고자 하는 금액이 변동된다.
- [147] 예컨대, 구매자 단말기(20)가 발행한 제1 디지털 자산이 2021. 4. 15.에 발행되었고, 제1 매출채권의 상환기일이 2021.5. 31., 금액이 100이고, 구매자의 신용도에 따른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이 3%이고,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제2 매출채권의 상환 기일이 2021. 6. 30., 금액이 100이며,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이 5%인 경우를 상정한다.
- [148] 제1 매출채권의 결제 대금으로서 구매자로부터 제1 디지털 자산을 수령한 제1 판매자가 2021. 4. 30.자로 제1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을 전부 결제하는 경우, 제2 판매자에게 제1 디지털 자산 모두를 양도하지 않고 일부만을 양도할 수 있다.
- [149] 만일,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제2 매출채권의 전부를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여 2021. 4. 30.에 결제하고 제2 판매자가 동일자로 제2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제2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자 한다면, 2021. 4. 30.부터 2021.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5% 할인된 금액만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2 판매자는 99.19의 금액을 조기 회수하게 된다.
- [150] 그러나, 제1 판매자가 제2 판매자에게 양도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은 2021. 4.

- 30.의 시점에서 제2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으면, 2021. 4. 30. ~ 2021. 5. 31.까지의 3%의 할인율이 적용되어 99.75의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 [151] 즉, 100의 제1 매출채권에 기초한 제1 디지털 자산의 2021. 4. 30. 현재의 자산 가치는 99.75이다.
- [152] 따라서, 제1 판매자가 제1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환 당시인 2021. 4. 30.의 시점에 99.75의 가치를 가지는 제1 디지털 자산으로 99.19의 금액을 지불하면 되므로, 99.44의 금액의 제1 디지털 자산을 제2 판매자에게 양도하게 된다.
- [153] 이와 같이, 구매자로부터 제1 디지털 자산을 수취한 제1 판매자는, 신용도가 높아서 할인율이 더 낮고 상환 기한이 가까운 제1 디지털 자산으로 제2 판매자에게 제2 매출채권을 결제할 때에 제2 매출채권의 가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 [154] 따라서, 제1 판매자가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자신이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받아 조기 회수하기 보다는 제2 판매자에게 제2 매출채권의 대금으로서 양도함으로써 금전 상의 이득을 보게 된다.
- [155] 또한, 제2 판매자로서도, 제1 판매자보다 신용도가 높은 구매자가 발행한 제1 디지털 자산을 양수하면, 제1 디지털 자산을 제1 매출채권의 상환 기일에 수령하여 제2 매출채권의 상환일보다 빠른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156] 또한, 제2 판매자가 제1 판매자로부터 양수한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받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높은 신용도로 인하여 제2 금융기관에서 할인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낮아 자금의 조기 회수가 용이하게 된다.
- [157] 한편, 도 3을 통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제1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수령한 제1 디지털 자산을 제2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아 제1 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 [158] 마찬가지로, 제1 판매자로부터 제1 디지털 자산이나 제2 디지털 자산을 수령한 제2 판매자도 이것을 제2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프로세서는 도 3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 [159] 이 실시예에서는 구매자와 제1 판매자 및 제2 판매자 사이에 디지털 자산이 발행되고 유통되는 것을 설명하였으나, 제2 판매자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제3의 판매자가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2 판매자는 제1 디지털 자산이나 제2 디지털 자산으로 제3의 판매자에게 가지는 매입채무를 결제하는 것을 물론이고, 자신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며, 그러한 절차는 앞서 설명한 프로세스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 [160] 이상으로 이 발명의 실시예의 유통 방법을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실시예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이 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한 범위에서 다양한 수정과 변형이 가능하며, 추가의 프로세스가 부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청구범위

- [청구항 1]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으로서,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매출채권에 관한 제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제1 세금계산서는 구매자가 보유하는 구매자 단말기에 송신되는 것인,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
구매자 단말기가 제1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1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발행된 제1 디지털 자산은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는 구매자가 제1 매출채권의 대금을 결제하는 상환 계좌를 운영하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인,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및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 컴퓨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에 제1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인,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후에,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1 판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는 것인,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 및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로 결제받겠다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를 더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1 판매자 또는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에 제1 판매자 또는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각각 송금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제1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후에,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1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제1 할인 의사 표시 단계에서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과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1 조기 회수 수락 단계; 를 더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구매자로부터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1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4]

청구항 2에 있어서,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후에,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의 할인과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조기 회수 수락 단계;

를 더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1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5]

청구항 2에 있어서,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에 관한 제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된 제2 세금계산서는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되는 것인,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 및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2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제2 매출채권의 금액과 상환 기일이 기록되는 디지털 방식의 제2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발행된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

를 더 포함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제1 판매자가 보유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결제하겠다는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받겠다는 수락의 의사 표시의 정보를 생성하여 제1 판매자 단말기에 송신하고,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보유 주체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1 판매자로부터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이 입금되면,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계좌 또는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판매자 또는 제2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6]

청구항 5에 있어서,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 후에,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제2 판매자가 보유하는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할인을 통한 제2 매출채권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생성하고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 및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에서의 조기 회수의 요청 정보를 수신한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조기 회수 요청의 수락 정보를 생성하여 제2 판매자 단말기에 전송하고,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지급에 관한 정보를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제2 조기 회수 수락 단계; 를 더 포함하고, 디지털 자산의 결제 단계는, 제2 판매자로부터 제2 매출채권의 금액이 제1 금융기관의 상환 계좌에 입금되면, 제1 금융기관의 컴퓨터가 제2 금융기관의 결제 계좌에 제2 할인 의사 표시에 관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금액을 송금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7]

청구항 1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8]

청구항 2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인,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과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9]

청구항 3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인,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과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1 할인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1 조기 회수 수락 단계는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0]

청구항 4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것인,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과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며,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조기 결제 수락 단계는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1]

청구항 5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 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며,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2]

청구항 6에 있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유통에 관하여 중개자에 의해 운영되는 중개 컴퓨터가 마련되고,
구매자 단말기는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및 제1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중개 컴퓨터는 제1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정보를 각각 제1 판매자 단말기와 제1 금융기관 컴퓨터에 전송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수락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며,
제2 세금계산서 발행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디지털 자산 발행 단계는 제1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할인 의사 표시 단계는 제2 판매자 단말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고, 제2 조기 회수 수락 단계는 제2 금융기관 컴퓨터가 중개 컴퓨터에 접속하여 중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3]

청구항 2에 있어서,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할인을 정보 및 제2 판매자가 제1 판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발생하는 제2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제2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2 금융기관의 할인을 정보가 미리 결정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에서, 제2 매출채권의 결제로서 제공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은 제1 매출채권의 상환일과 제2 매출채권의 상환일의 간격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4]

청구항 5에 있어서,
구매자가 발행하는 제1 디지털 자산을 할인하여 지급하는 제2 금융기관의 할인을 정보 및 제2 판매자가 제1 판매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댓가로서 발생하는 제2 매출채권에 기초하여 제1 판매자가 발행하는 제2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2 금융기관의 할인율 정보가 미리 결정되고,
제2 매출채권 결제의 의사 표시 단계에서, 제2 매출채권의 결제로서 제공되는 제1 디지털 자산의 금액은 제1 매출채권의 상환일과 제2 매출채권의 상환일의 간격 및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

[청구항 15]

청구항 1에 있어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발행,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에 의한 제1 매출채권 또는 제2 매출채권의 결제, 제1 디지털 자산 또는 제2 디지털 자산의 할인에 의한 조기 회수의 정보는 중개 컴퓨터, 구매자 단말기, 제1 판매자 단말기, 제2 판매자 단말기, 제1 금융기관 컴퓨터 및 제2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분산원장으로 기록되어 전송되는 것인, 매출채권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 방법.